

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12
----------	-----

제 출 일 : 2025. 5. 30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. 12. 31.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15조)
 - 2025년 12월 31일 → **2030년 12월 31일**
-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 - 내지 → 또는(안 제5조제3항)
 - 의하여 → 따라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부서협의결과
 - 1) 협의기간 : 2025. 3. 18. ~ 2025. 3. 19.
 - 2) 협의결과
 - 비용추계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 -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결과
 - 1) 예고기간 : 2025. 4. 3. ~ 2025. 4. 23.(20일간)
 - 2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남양주시 조례 제 호

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내지”를 “또는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관·과		예산과
입안자	관·과장 직위·성명	예산과장 안병찬
	팀장 직위·성명	예산2팀장 손덕호
	담당자 성명·전화	허지영 (031-590-4204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· ② (생 략)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 1호 <u>내지</u> 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 용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 략) ④ (생 략)	제5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--- <u>또는</u>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통합기금의 관리 · 운용) 통 합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 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 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· 관 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<u>의하여</u> 운용하여야 한다.	제6조(통합기금의 관리 · 운용) 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따라</u> -- -----.
제15조(존속기한) 통합기금의 존 속기한은 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지 로 한다.	제15조(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30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본 조례 개정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내용이므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없음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 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4. 작성자

기획조정실 예산과장 안병찬

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

-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-



남 양 주 시



수신 예산과장

(경유)

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(2025A경기남양028)

1. 예산과-2785(2025. 3. 18.)호와 관련입니다.
2. 귀 부서에서 제출한 「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은 법령시행일, 효력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,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여 성 아 동 과 장

주무관

이연희

여성정책팀장

홍주희

여성아동과장

배진위

2025. 3. 19.

협조자

시행 여성아동과-10358

(2025. 3. 19.)

접수 예산과-2868

(2025. 3. 19.)

우 12232

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, 별관4층 (금곡동)

/ <http://www.nyj.go.kr>

전화번호 031-590-3965

팩스번호 031-590-2269

/ yhlee0127@korea.kr

/ 비공개(5)

-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-

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

-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-



남 양 주 시



수신 예산과장
(경유)

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(2025-30)

예산과-2786(2025.3.18.)호와 관련하여 「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개정(안)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■ 주요평가내용 :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

■ 평 가 결 과 : **원안동의**

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. 끝.

감 사 관

주무관 김주현

청렴윤리팀장 이정주

감사관

2025. 3. 19.
문경석

협조자

시행 감사관-3057

(2025. 3. 19.)

접수 예산과-2841

(2025. 3. 19.)

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, (금곡동)

/ <http://www.nyj.go.kr>

전화번호 031-590-4719

팩스번호 031-590-2079

/ sjh99006@korea.kr

/ 비공개(5)

-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-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관 리 번 호	2025-남양주-30		
자 치 법 규 명	가)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	
평 가 담 당 부 서	감사관	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	행정7급 김주현
입 안 부 서	예산과	입 안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	행정8급 허지영
평 가 결 과 통 지 일	2025. 3. 18.		
통 보 내 역	원 안 동 의		
관 련 조 문	검 토 결 과	조 치 사 항	
-	-	-	
2025년 3월 18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 (담당자 / 연락처 : 김주현 / 031-590-4719) 나) 예산과장 귀하			

붙임 4 규제심사 결과

-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-



남 양 주 시



수신 예산과장

(경유)

제 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「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안

1. 남양주시 예산과-2786(2025. 3. 18.)호와 관련됩니다.
2. 「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(안)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, 해당 개정안은 우리 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의 연장 및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자구정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,
3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상 행정규제*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, 「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(행정규제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·규칙에 규정되는 사항
끝.

의 회 법 무 과 장

주무관

조현기

규제개혁팀장

안재현

의회법무과장

양기영

2025. 3. 18.

협조자

시행 의회법무과-3444

(2025. 3. 18.)

접수 예산과-2804

(2025. 3. 18.)

우 12232

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(금곡동)

/ <http://www.nyj.go.kr>

전화번호 031-590-7320

팩스번호 031-590-2900

/ hgj1235@korea.kr

/ 비공개(5)

-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-

붙임5 입법예고 결과 보고

-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-



남 양 주 시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「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

1. 예산과-3198(2025. 3. 31.)호와 관련입니다.
2. 「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「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가. 자치법규: 「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입법예고 기간: 2025. 4. 3. ~ 2025. 4. 23.(20일간)

다. 입법예고 방법: 시보,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

라. 입법예고 결과: 의견 없음 / 의견제출 0건

마. 향후계획: 조례·규칙심의회 상정(2025. 5.)
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

주무관

허지영

예산2팀장

손덕호

예산과장

안병찬

기획조정실장

전결 2025. 4. 25.

구형서

협조자 의회법무팀장 김설

의회법무과장 양기영

시행 예산과-4200

접수

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, 남양주시청 제1청사(금곡동) / <http://www.nyj.go.kr>

전화번호 031-590-4204 팩스번호 031-590-8399 / jeong320korea.kr / 대국민 공개